

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3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관람 및 매표시간 개정을 통해 박물관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박물관 관리·운영의 효율성 제고
-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임명 기준을 구체화하고, 위원회 비상설화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
- 띄어쓰기, 정비대상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문을 알기 쉽게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박물관 등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을 09:00에서 10:00으로 변경(안 제5조)
- 나.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조항 삭제(제16조의2)
- 다.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임명사항 구체화 조항 신설(안 제17조)
- 라. 운영자문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 전환 조항 신설(안 제17조)
- 마.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준용 조항 신설(안 제17조)
- 바. 운영자문위원회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(제18조)
- 사. 띄어쓰기, 정비대상 용어 수정
(안 제5조 ~ 제7조, 제11조 ~ 제13조, 제16조, 제17조,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 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5. 9. 10. ~ 2025. 9. 30. (20일간)

사. 기타 참고사항

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
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관람시간: 10:00~18:00
2. 대표시간: 10:00~17:30

제6조제3항 중 “실비”를 “실비(實費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유관기관”을 “유관 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제11조제1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”를 “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6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

중 “통할하며”를 “총괄하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 또는 박물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자문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⑥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대부해양본부
입	해양수산과장	김 충 식
안	해양행정팀장	이 지 선
자	담 당 자 (연 락 처)	유 승 완 (481-3692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박물관 등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관람시간 : 09:00~18:00</u></p> <p>2. <u>매표시간 : 09:00~17:30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관람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체험학습에 필요한 <u>실비</u>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소요금액을 공지하여 체험학습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, 별도 영수증을 발행한다.</p> <p>④ 시장은 <u>유관기관</u>과 제휴협약 등을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 및 면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7조(관람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「<u>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 제</p>	<p>제5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관람시간: 10:00~18:00</u></p> <p>2. <u>매표시간: 10:00~17:30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관람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실비(實費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<u>유관 기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관람료의 면제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</p>

현행	개정안
<p><u>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u> 2. ~ 12. (생략)</p> <p>제11조(유물의 구입 등)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의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2조(유물의 기증) ① 시장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유물의 대여)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6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<u>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u> 2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유물의 구입 등) ①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유물의 기증) ① <u>시장은</u> <u>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8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유물의 대여) ①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의2(준속기한) 위원회의 준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17조(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18조(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</p>	<p><삭제></p> <p>제17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 호선(互選)한다.</p> <p>③ ----- ----- 총괄하며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 또는 박물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자문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p> <p>⑥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</u> <u>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</u> <u>3. 질병, 장기출장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</u> <p>제20조(수당 등)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유물의 감정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<u>그리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20조(수당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렇지 않다.</u></p>